

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조례(안)

2005. 5. 2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4월 28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4월 28일

다. 상정일자 : 제112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5. 5. 23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난관리팀장 곽 승 열

가. 제안이유

재난 및 재해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“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”이 제정(2004.3.11)되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를 두되, 위원은 재난 관계 행정기관·단체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,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도록 함(안 제5조 및 제8조)

○ 위원회 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함(안 제9조)

○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

○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, 관계 소속 공무원을 차장·총괄조정관 및 재난의 유형에 따른 수습부서의 지정 및 실무반의 구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7조 및 제19조)

○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거나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때에 운영하도록 함(안 제20조)

○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,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모니터 요원 및 공보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)

○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하도록 함(안 제32조)

○ 자문단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하도록 함(안 제34조)

○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(부칙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, 제16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, 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, 마포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형식은 본칙 4개장 37개조와 부칙 3개조로 배열되었음.

<주요 내용>

○ 안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로 구분하여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2장에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,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지 안 제16조에 규정 하였으며, 주요내용은 동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, 위원은 마포 소방서장, 마포경찰서장 및 육군5750부대장 등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과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의 대표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,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내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3장에는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하여 총괄하고 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명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,기능,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내지 안 제26조에 규정하였으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 하는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도록 하였음.

○ 안 제4장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자문단의

설치, 기능, 구성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 내지 안 제37조에 규정하였고,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음.

○ 부칙에는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음.

<검토의견>

○ 동 조례안은 2004.6.1 소방방재청이 출범하고 재난 및 재해 관련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조례안에 의해서 설치되는 안전관리위원회나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사료됨으로 관련부서에서는 각 위원회는 물론 위원 상호간에도 항상 유기적인 협조와 재난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각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, 만약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과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질의요지(정형기 위원) :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들이 안전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는가?

○ 답변요지(이은규 행정관리국장) : 예. 그렇습니다.

○ 질의요지(오윤수 위원) : 기존에 있던 마포구 재해대책 본부 위원에 의원은 몇 명이었는가?

○ 답변요지(곽승열 재난관리팀장) : 1명이었음.

○ 질의요지(박지위 위원) :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과의 차이점은?

○ 답변요지(곽승열 재난관리팀장) : 기능에서 차이가 있음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·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5. 4. 28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정 이유

재난 및 재해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”이 제정(2004.3.11) 되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가. 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를 두되, 위원은 재난 관계 행정기관·단체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,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도록 함.(안 제5조 및 제8조)
- 나. 위원회 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함.(안 제9조)
- 다.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
- 라.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, 관계 소속 공무원을 차장·총괄조정관 및 재난의 유형에 따른 수습부서의 지정 및 실무반의 구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7조 및 제19조)

- 마.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거나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때에 운영하도록 함. (안 제20조)
- 바.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, 지역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모니터 요원 및 공보 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)
- 사.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하도록 함(안 제32조)
- 아. 자문단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하도록 함(안 제34조)
- 자.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(부칙 제2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“없 음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, 제16조 및 제75조
- 나. 예산조치 : 예산팀 협의완료
- 다. 협 의 : 기획예산과, 치수과 협의완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기 타
 - (1) 입법예고 (2005. 3. 25 ~ 4. 14) 결과, 특이한 사항 없음.
 - (2)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·운영조례(안) 1부 끝.